

■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별지 서식]

기능성을 나타내는 원재료의 일반식품 사용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	------	-----	----------

신청인	성명(법인은 법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업체명(기관명)		영업의 종류	
			허가/신고/등록번호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수입건강기능식품	수출국		
		제조회사		
		소재지		

신청사항	기능성 원료 인정 번호		
	기능성 원재료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등의 기능성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능성 원료의 일반식품 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원재료 또는 성분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신청인	➔	접 수	➔	검 토	➔	결 재	➔	통보
---------------	---	-----	---	-----	---	-----	---	----

처리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담당 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